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4월 16일, 윤재옥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4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5.8.21.)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9.)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윤재옥)

건설현장에서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하지만 건설현장에서의 마약, 음주운전 등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이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개정하고,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현행법 제27조의2는 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제1호는 건설기계조종사(이하 “조종사”라 함)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제2항은 고용주가 조종사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

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각각 금지하고 있음.

동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는 현행법 제28조 및 제41조에서 각각 행정처분과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8조제7호는 조종사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41조제17호는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와 이를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로서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이하 “음주운전”이라 함)을 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4항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이하 “약물운전”이라 함)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6년 4월 2일부터는 약물운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 내용의 처벌 규

정이 시행될 예정으로,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건설기계관리법」의 음주조종 및 약물조종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음주조종 및 약물조종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의 입법례와 같이 현행법보다 높은 수준의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행정처분 및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동행위들로 인한 건설사고 및 인적·물적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현행법에 대한 개정안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법은 음주조종과 약물조종을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으로 같은 조문에 규정하고, 음주조종 및 약물조종에 대한 행정처분과 벌칙도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개정안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약물조종을 안 제28조제8호로 분리하여, 약물조종을 한 경우에는 음주조종과 달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벌칙과 관련해서는, 안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약물조종’을

한 자와 이를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안 제4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음주조종’을 한 자와 이를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행정처분 및 벌칙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되, 음주조종과 약물조종을 각각 구분하여 다른 조문에 규정하고, 약물조종과 관련된 제재를 음주조종에 관련된 제재보다 강화하고 있음.

이는 마약 등 약물이 환각, 환시, 환청, 정신불안 등을 유발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고, 마약 등 약물 투여는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약물조종과 음주조종의 제재에 차이를 두려는 것으로 생각됨.

4. 대체토론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 권영진)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서범수의원(2건)

과 윤재옥의원(2건)이 각각 대표발의한 네 건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6. 찬반토론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내용을 반영함.